

4. 國土利用管理法 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3-202號 1993. 12. 6

1. 개정취지

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('93. 8. 5. 법률 제4,572호)으로 인하여 개편되는 용도지역에 대한 입안기준을 정하고, 토지거래허가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개편되는 도시지역, 준도시지역, 농림지역, 준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입안기준을 정함.

○ 도시지역

- 도시기본계획구역
- 인구밀도 1,000인/km²이상으로서 취업인구 30%이상인 제2차산업 및 제3차산업에 종사하는 지역
- 국가계획에 의하여 도시로 개발

할 예정인 지역

○ 준도시지역

- 취락지구 : 상주인구 500인 이상 또는 가구수 100호이상인 지역
- 운동·휴양지구 :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, 체육시설, 청소년수련시설지구
- 집단묘지지구 : 묘지수급계획에 적합하고, 임상이나 토질등이 집단묘지로 개발함에 적합한 지구
- 시설용지지구 : 농공단지, 개별공장입지, 폐기물처리시설입지등

○ 농림지역 :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로 지정·관리하고자 하는 지역

○ 준농림지역 :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로 지정된 지역

○ 자연환경보전지역

- 공원구역, 상수원보호구역, 문화재보호구역, 녹지보전지역
- 산악·구릉·하천·호수·댐·해안·섬 등으로 자연경관이 빼어

난 지역

- 인공호수 및 자연호수의 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
- 해조류·어패류 등 수산동식물의 주요서식지·산란장으로서 수산 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해역·하천 또는 호수등 공유수면

나. 토지거래허가제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, 동 토지이용계획에는 토지의 개발·이용계획, 착공 및 준공일자, 자금조달계획등을 포함하도록 세부적

으로 정함.

3. 의견제출

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 토지이용계획과장, 전화번호 503-734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모이면 질서있게, 끝날땐 깨끗하게